

행정안전부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연 월 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공포, 6. 27. 시행)됨에 따라, 개선과제의 이행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의 통보 기한, 재난안전관리교육 대상·횟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대상에 시·도의 부단체장을 추가하고, 국가핵심기반 지정·취소·변경절차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세부사항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 중 2회 이상 재난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1회차 교육은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2회차 교육은 1회차 교육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받도록 하는 등을 규정함

나. 인용법률 제명 등 변경사항 반영(안 제5조의2)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24.5.17.시행)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중 관련 인용 법률 제명 등 정비

※ (현행) 8. 「문화재보호법」 지정문화재

→ (변경)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정문화유산

다. 국가핵심기반 지정·취소·변경절차 서식 마련 등(안 제5조의3, 별지5·5의2·5의3 신설)
국가핵심기반의 관리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가핵심기반의 변경에 관한
규정 및 지정·취소·변경의 절차에 관한 필요 서식을 구체화함

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대상 확대(안 제6조의2)

지역재난대책본부 차장 역할을 수행하나 재난안전교육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 시·도의 부단체장을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중 관리자
전문교육 대상에 추가함

※ 시·군·구의 부단체장은 기 관리자 전문교육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교육을 받게 됨(24.6.27.시행)

마. 행정안전부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장 변경(안 제21조)

포상금 지급 심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장을 현행 안전정책실장
에서 포상금 지급심의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변경함

바.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요청 추진절차 규정(안 제24조)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제도 개선과제의 이행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의 통보 기한, 수용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보해야할 사항 등을 규정함

사. 해양 관련 긴급구조지원기관 추가(안 별표1)

해양에서의 긴급구조가 가능한 인력·시설·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
능력을 보유한 기관·단체*를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함

*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해양환경공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시·도의 단체장
2.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단체장

② 제1항의 교육대상자는 임기 중 2회 이상 법 제16조의2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1회차 교육은 임기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2회차 교육은 1회차 교육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운영과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의2제8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핵심기반 지정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6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가핵심기반 지정 취소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정위원회에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국가핵심기반 지정 변경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 국가핵심기반의 명칭
2. 국가핵심기반의 관리기관
3.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범위
4. 국가핵심기반의 소재지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변경 사유와 함께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시·도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제21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을 “포상금 지급심의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요청) ①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개선과제의 이행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과제의 수용 여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이행요청을 받은 개선과제가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선과제 수용이 곤란한 사유
2. 개선과제의 수용에 따른 문제점
3. 개선과제의 대안에 대한 검토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개선과제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검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별표 1에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지방해양수산청

21. 어업관리단

22.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의3, 별지5, 별지5의2, 별지5의3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시·도 부단체장으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은 제6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6월 말까지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재임중인 교육의 대상자가 이 법 시행일 이전 18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시행일까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을 1회 이상 이수

한 경우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1회차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재임중인 교육의 대상자가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2회차 교육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한다.

③ 재임중인 교육의 대상자가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1회차 교육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한다.

국가핵심기반 지정 심의요청서

명칭	
분야	
관리기관	
지정범위	
소재지	
주요 기능	
지정 필요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반 지정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명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국가핵심기반 지정 취소 심의요청서

명칭	
분야	
관리기관	
지정범위	
소재지	
주요 기능	
지정 취소 사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반 지정 취소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국가핵심기반 지정 변경 심의요청서

명칭	
분야	
관리기관	
지정범위	
소재지	
주요 기능	
지정 변경 대상	
지정 변경 내용	
지정 변경 사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반 지정 변경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대상자 등)</u> <u>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u> <u>1. 시·도의 단체장</u> <u>2.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단체장</u> <u>② 제1항의 교육대상자는 임기 중 2회 이상 법 제16조의2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1회차 교육은 임기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2회차 교육은 1회차 교육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한다.</u> <u>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운영과 법 제16</u>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난상
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
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의 화재
등 관련 사고

9. ~ 14. (생략)

<신설>

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대행기
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다.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

1. ~ 7. (현행과 같음)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9. ~ 14. (현행과 같음)

제5조의3(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30
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의 국
가핵심기반을 지정하려는 경우
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
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
위원회”라 한다)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국가핵심기반 지정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
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6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가핵심기반 지정 취소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정위원회에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국가핵심기반 지정 변경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 국가핵심기반의 명칭
2. 국가핵심기반의 관리기관
3.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범위
4. 국가핵심기반의 소재지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변경 사유와 함께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 다. (생략)

<신 설>

2. (생략)

- ② ~ ④ (생략)

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① ~ ③ (생략)

④ 행정안전부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

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시·도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포상금 지급심의 대상 업무를 담당

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생략)

<신설>

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요청) ①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개선과제의 이행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과제의 수용 여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이행요청을 받은 개선과제가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선과제 수용이 곤란한 사유

2. 개선과제의 수용에 따른 문제점

3. 개선과제의 대안에 대한 검토

토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개선과제의 이
행이 곤란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전문가 등
과 합동으로 검토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